C - 55 - 2015

(9) 부재 운반용으로 팔레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, 적재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차량에 결속 처리하며 차량적재 후 결속부위는 마찰에 의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.

5. 설치 시 안전조치 사항

5. 1 일반사항

- (1) 설치작업 전 세부 작업공정 단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.
- (2) 안전작업계획서 수립 시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.
 - (가) 커튼월의 형식, 규모, 기상조건, 휴일, 작업범위 등을 고려한 작업 일정
 - (나) 부재 수, 형태, 중량, 치수 등을 고려한 작업량
 - (다) 양중장비의 종류, 규격, 설치장소, 양중방법
 - (라) 부착 기계·기구의 종류, 성능, 사용방법
 - (마) 근로자 동원 및 작업반 구성
 - (바) 타 공종과의 간섭 여부
 - (사) 가설전기 사용에 따른 계획
- (3) 부재 설치 시 구조체의 강도저하로 인한 커튼월 틀 낙하 등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일 때 실시하여야 한다.
- (4) 부재 설치 시 추락 및 부재의 낙하·비래 재해예방을 위하여 폭 40 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여건상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5) 고령자 및 질병보유자는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고소작업 배치를 제한할 수 있다.
- (6) 부재 설치 전 구조물에 먹메김 시 돌출물에 의한 추락, 전도 등의 재해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.